

인천광역시 ·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 번호	941
----------	-----

발의연월일 : 2009. 11. 6.
발의자 : 강문기 의원
(찬성자 7인)

1. 주 문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함.

2. 제안이유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제43조(의회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붙임>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일자 : 2009. 12. 21(월) ~ 12. 23(수) <3일간>

- 인천광역시 : 2009. 12. 21(월) ~ 12. 22(화) <2일간>

- 인천광역시교육청 : 2009. 12. 23(수) <1일간>

※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출석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

○ 출석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 요구이유 :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출석대상자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

-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제43조 (의회규칙) ○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7조의3 (설립)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3조 (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관련조례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단,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은 처(실·국)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7.10.8>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8.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9.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10.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참 고>

위 출석요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사 관련 타 위원회 출석요구 등 의장 및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심사(또는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또는 본회의) 출석은 안건제출(또는 의견제시)자로서의 출석의무 이행이므로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관계공무원은 당연(자진)출석하여 제안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함.